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이 경 래**

1. 들어가는 글
2. ‘아카이브 정의’에 기초한 과거사 집단기억의 재구성
 - 1) ‘아카이브 정의’의 개념화
 - 2) 과거사 집단기억의 이론적 프레임
3. ‘아카이브 정의’에 기초한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모델링
 - 1)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실태 분석
 - 2)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대안적 모델링
4. 나오는 글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225).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전공) 강사. 주요 논저: 이경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한국기록학회, 2015; 이경래,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한국기록학회, 2014;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 한국기록학회, 2013; 이경래, 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한국기록학회, 2013; 『기록보존론』(공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3, 선인, 2013.

▪투고일 : 2015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 2015년 9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9월 28일.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진실화해위원회, 집단기억, 아카이브 정의,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 사회적 출처주의, 평행출처주의, 아카이브 액티비즘, 리빙 아카이브, 참여 아카이브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과거사 관련 집단기억의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에 입각한 동시대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집단기억은 개인 기억 혹은 공동 기억의 산술적 합을 지칭하기보다는 해당 사회의 총체적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구조화된 사회적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집단 기억을 당대 국가 통치자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억압을 당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화하는 ‘아카이브 정의’란 개념을 갖고 살펴보려 한다. 이 아카이브 정의로부터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각 시대별 통치 주체의 변화에 따른 대단히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 기록화 과정과 부침을 방지할 수 있는 과거사 기록화의 원칙을 제안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집단기억과 화해, 또는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기제로서 아카이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먼저 해외 기록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말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의 최종보고서를 출간하자마자 “아카이브 재고찰”(Refiguring the Archive)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민주 정부로의 이행기동안 과거 군부나 비민주 통치 집단의 민간잔혹 행위에 대한 집단기억의 복원과 재구성을 통해 아카이브의 역사 ‘화해’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식민지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피지배계급인 원주민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한 바스티앙의 연구¹⁾를 비롯해서, 후기식민주의 국가적 특성을 지녔던 호주에서도 백인 중심의 식민 아카이브 체계에서 호주 원주민들의 집단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1) Jeannette Allis Bastian, *Own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2003,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기록학적 접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후자의 예로, 마이클 피콧과 슈벡케미쉬²⁾, 그리고 헐리³⁾ 등의 연구는 집단 기억의 복원과 화해의 주요 매개 방식으로써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대표적인 성과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지배계급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진실 규명과 화해라는 체제 이행기에 역사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으로 피지배 기층 계급이 기록 관리에 있어 그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과거사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계기로 진실 규명과 집단 기억의 중요한 매개로서 아카이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기록학회의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기록”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⁴⁾,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심포지움⁵⁾은 학계의 관련 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해외연구에서의 성과와는 다르게,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진실규명과 집단 기억의 복원에 있어서, 아카이브 역할에 대한 타당성 논의에 그쳤다. 또한, 일부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법·제도적 기반 정비, 기록관 건립, 콘텐츠 개발 등 대체로 정책·제도적 접근에만 머무른 채 기존의 지배계급 중

2) Michael Piggott and Sue McKemmish, “Recordkeeping,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Reality”,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nnual Conference, Sydney, 2002*,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piggottmckemmish2002.pdf.]

3) Chris Hurley, “Parallel Provenance (If these are your records, where are your storie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2), 2005.

4) 한국기록학회,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기록 - 국내의 역사기록물 현황과 역사 기록관 건립 방안 모색』, 광복 60년 종합학술대회 4차, 2005.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초청 국제행사 자료집, 2008.

심의 기록학적 프레임에 대한 본질적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아쉬움을 주고 있다.⁶⁾ 강제동원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한·일 공동의 기억을 위해 다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기록학적 프레임을 접목해 관련 국가 기관들 간 상호 협력적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집단기억의 공동 기록화를 논의한 연구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일 네트워킹을 통한 공통의 목록 제작이라는 아카이브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였다.⁷⁾ 또한 과거사 아카이브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기록의 정치학’과 관련해 최근 “기록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논한 제 3회 전국기록인대회(2011)에서 또한 과거사 위원회 기록에 관한 기조 논의 역시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록의 생산, 보존, 처분, 이용 등 몇 가지 쟁점들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이행기적 ‘정의’의 기제로서 과거사에 대해 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 즉 피해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재했다.⁸⁾ 기록의 수집과 이의 체계적인 정리 작업, 이후 콘텐츠 구축과 서비스 제공 등의 구축 프레임이 여전히 기존의 지배적 기록관리 패러다임으로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였다.

앞서 해외 사례를 통해 간략히 언급했지만, 최근 들어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학적 논의는 기존의 지배계급 중심적이고 공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가지는 식민주의와 비민주성에 착목하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 즉

-
- 6)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008, 247-292쪽; 손동유,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학회 제55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2007.
 - 7) 차정민,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기억형성과 기록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8)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학회, 『기록관리의 사회적 책임』, 제3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11.

이전의 지배적인 이론적 프레임으로는 아카이브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보고, 아카이브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들을 제안한다.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으로부터 추출된 이론적 프레임들 가운데 특히 ‘과정으로서 아카이브’와 ‘사회적 출처주의’(평행출처주의), 그리고 ‘아카이브 액티비즘’ 등은 피해당사자 중심의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집단기억의 복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 이론적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러한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논의들에서 추출한다. 이어서 이들 주요 이론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 이들 이론적 자원에 기반해 피해당사자 중심의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에 적용될 수 있는, 과거사 집단기억 아카이브의 새로운 모델링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아카이브 정의’에 기초한 과거사 집단기억의 재구성

1) ‘아카이브 정의’의 개념화

‘아카이브 정의’에 대한 개념 규정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카이브, 그리고 아키비스트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아카이브가 범

정에서 재판의 법조문마냥 정의를 집행할 권한 규정이라 보긴 어렵지만, 온전한 문서 보존을 통해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일정한 역할, 즉 설명책임성 확보, 진실 규명, 그리고 집단 기억의 구축이라는 책무를 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왔다.⁹⁾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즉 지배·피지배의 식민 통치 시절에 이어 민주·반민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경험해 온 역사적 상황은 한국에서 아카이브를 사회 정의의 기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통치술의 효율적 담론 장치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동안 식민 세력과 지배층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은 통치 권력의 설명책임성과 당위성에 복무하도록 강요된 반면 피지배 세력과 풀뿌리 계층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결국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집단기억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록 기제가 되어 주지 못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공공 기록을 생산했지만, 대체로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 일반 대중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 과기해 버렸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정권의 폭력으로 점철된 권위주의 시기에 기록물에 대한 통제는 권력 행사의 일부분을 이뤘고, 권위주의 체제는 자신의 통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검열, 몰수, 또는 접근 금지 등을 통해 집단 기억을 조작하거나 말살해 왔다. 국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은폐와 노골적 부인, 그리고 반공주의의 잣대로 공동의 기억을 재단하면서 이를 조작하고 왜곡하여 집단기억을 뒤틀리게 했다.

역사적 기억의 이러한 불구 상황 속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카이브 체제와 직접적으로 접목되게 된 전기는,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이뤄졌다.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들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목적으

9) Michelle Caswell, “Khmer Rouge archives: accountability, truth, and memory in Cambodia,” *Archival Science*, 2010(10), pp.25-44.

로 구성됐다. 과거사 청산에서 핵심적 임무는 진실 규명에 있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의 임무는 진상 조사를 통해 과거사 집단기억의 올바른 복원에 있었고, 실제 관련 기록의 수집을 통한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을 불가피하게 했다. 당시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는 피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진상 조사가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상을 뒷받침할 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의 수집과 이것의 사회적 재맥락화가 해결되어야 할 주요 관건이었다. 국가 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자는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기 어렵고 가해자인 공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폐기해 버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관련 기록의 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피해당사자 중심의 재맥락화는 꽤 힘든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불운한 과거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효과적인 민주화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들, 즉 아카이브에 대한 참여와 접근, 그리고 아카이브의 구성과 해석에 의해 항상 측정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¹⁰⁾ 그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누구보다도 아카이브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특히 아카이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 그리고 평가 및 분류/기술에 있어 기록의 민주적 맥락화를 아카이브 정의 실현에 중요한 전제로 간주하였다. 즉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목적을 위하여 현용 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망라해서 공공 기록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록화 과정에 참여해서 아카이브의 구축에 시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에 달려 있다고 본다. 데리다가 지적한 기준들은 ‘아카이브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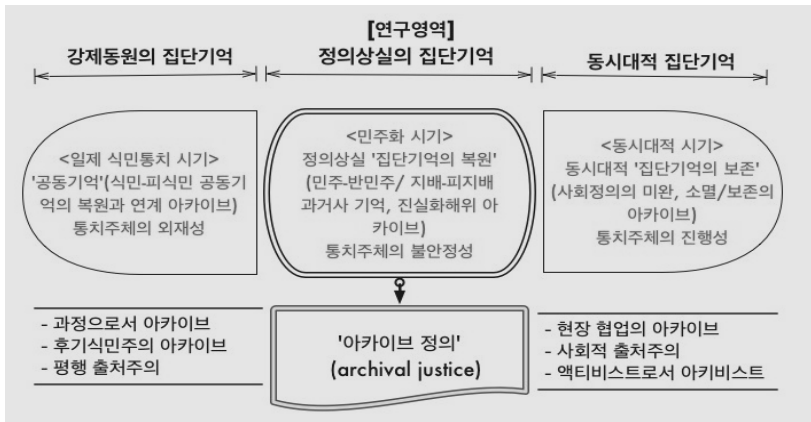
10)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4.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이란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이 기록화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기록화하고 이것들을 쉽게 사용·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 정의는 바로 피해당사자들의 사회적 침묵에 제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기억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결국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은 피해당사자를 아카이브 구축의 주체로 삼고 있기에 국가기록 중심의 혹은 지배계급 중심의 아카이브를 극복하는 동시에 체제 변동 시 각 통치 엘리트에 의한 아카이브 불안정을 제어할 수 있는 집단기억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구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집단기억의 민주적 기록화, 즉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은, 첫째, 피해당사자에 기반한 아카이브 구축(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둘째, 구축된 아카이브에 대한(피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의 접근권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배·피억압 계층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록의 재맥락화 등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아카이브 정의의 기본 전제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과거사 집단기억의 이론적 프레임

과거사 집단기억의 재구성, 즉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은 다음의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식민주의 시기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억과 복원, 한국전쟁 이후 후기 식민주의와 권위주의 시기의 집단학살의 ‘정의 상실’ 집단기억과 복원,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 시기의 동시대적 집단기억의 보존과 실천이라는 역사적 아카이브의 진화 및 재구성의

파노라마 속에 자리매김된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필자의 연구 영역으로 보자면 다이어그램의 중간 위치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즉 군부 폭압의 과거사 집단 기억을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기록학으로 정초하려는 이론적 프레임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의상실의 집단기억에 대한 기록화는 이전 시기의 강제동원의 집단기억과 현재의 동시대적 집단기억의 민주적 아카이브 구축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카이브를 단순히 기록물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식론적 투쟁의 장소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지배적 아카이브 구성방식, 즉 국가 중심적이고 지배계급 중심적인 아카이브가 만들어 내는 통제와 남용에 대응해서 맞설 수 있는 피해당사자 중심의 아카이브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의 개발은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구에서 부상하는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가 제안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들은 직접적으로 뿌리 깊은 식민주의와 국가기록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

서 아카이브 정의에 기초한 과거사 집단기억의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험으로부터 끌어낸, 다음 세 가지 원칙들에 기반하여 과거사 집단기억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

지금까지 아카이브는 주로 기록의 집합체나 보관소, 즉 일종의 사물(archives-as-things)로서 간주되어 왔다.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archives-as-a process)는 식민주의 시기 아카이브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스톨러(Ann Stoler)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는 아카이브를 콘텐츠로서가 아니라 의미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임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시대 기록화 프로세스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 아카이브가 지배통치술에 오염되었음을 밝혔다. 스톨러는 식민주의 아카이브를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아카이브의 형태 및 분류 체계를 식민주의와 근대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라봤다. 인도에서 네덜란드 식민 정부에 의해 행해진 기록화 전략을 분석한 스톨러는, 식민 권력의 원천인 백인 특권의 불안정성을 상쇄시키는 동시에 통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서들로 아카이브가 한껏 채워졌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그는 식민지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사례로 '식민지조사위원회'(colonial commission)의 공식보고서를 들면서, 이것이 백인지배 계급의 통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록들을 조직하고 기록의 범주를 재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평가에 있어서도, 공식보고서는 통치자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분노, 경멸, 그리고 연민 등의 감정 지식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여백에 쓰여진 이들의 메모들은 식민지 대중의 문화적 관습을 격하하고 신랄하게 조롱하는 일이 비밀비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비밀주의적으로 생산하고

선택적으로 배급하면서 식민지 아카이브를 구축했음을 논증했다. 스톨러는 그래서 식민주의 아카이브를 극복하기 위해선 분류·기술·평가·접근 등 기록관리 프로세스에서의 식민주의 요소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 구성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보다는 수집된 기록들의 재맥락화 및 공개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¹¹⁾

식민주의 아카이브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는 스톨러의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는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이는 다양한 관련 기록의 수집과 (물리적) 보관만큼이나 이것의 사회적 재맥락화, 즉 수집에서부터 접근까지 피해당사자 중심의 기록화 프로세스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아카이브의 정치 비밀주의와 접근 통제를 뒤집고 이것들을 더 투명하고 공개된 아카이브 과정으로 바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카이브 정의 실현에 있어서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민주 사회의 실현에서 보자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비견될 수 있다. 결국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사결정 과정, 즉 수집대상 선정에서부터 평가·선별 기준, 그리고 분류·기술 체계 및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는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사회적 출처주의(평행 출처주의)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기록학 연구자들은 기존의 저(작)자(authorship) 중심의 단일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관리 체계가 피지배계급과 소외계층의 타자화와 대상화를 초래했다

11) Ann Laura Stoler,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s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 2002, pp.87-109.

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칙으로 ‘사회적 출처주의’(social provenance)와 ‘평행 출처주의’(parallel provenance)의 프레임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인 앤더슨(Jane Anderson)은 호주 식민 시기에 백인 통치계급이 기록 생산의 유일한 저작자가 되는 단일 출처주의에 입각한 식민지 아카이브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즉 앵글로색슨계 지배 백인층이 피지배층인 호주 원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소외시키고 타자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였다.¹²⁾ 그는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의 주요 원칙인 출처주의 가운데 지배계급 중심의 ‘단일 출처주의’란 개념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기록 관리가 지배 계급의 내러티브에 목소리를 제공하는 반면 억압받는 피지배 계급이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상실케 하는 기제를 밝혀내고 있다.

단일 출처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사실상 이미 1990년대에 쿡(Terry Cook)¹³⁾과 네스미스(Tom Nesmith)¹⁴⁾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지배계급 중심의 단일 출처주의에 근거한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출처주의를 제안했다. 사회적 출처주의는 말하자면 기록을 둘러싸고 있는 인식 가능한 모든 다층적인 관계망의 전체가 기록의 복합적 출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를 구성한다. 기록 생산자의 범주로는 우선 행위 주체로서 그동안 단일 출처로 간주되어 오던 저자(즉 지배계급이자 통치세력) 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 즉 피해 당사자나 피억압 계층을 포함하여야 하고 더불어 이들 다양한 행위주체의

12) Jane Anderson, “Anxieties of Authorship in the Colonial Archive”, Cynthia Chris and David A. Gerstner, eds, *Media Authorship*,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13; 이경래,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2017, 31-32쪽 재인용.

13)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Spring 1997, pp.17-63.

14) Tom Nesmith,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65, Spring/Summer 2002, pp.24-41.

행위를 맥락화하는 사회적·문화적 프레임도 기록 생산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회적 출처로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했다.¹⁵⁾ 또한 호주의 대표적 기록학자인 헐리(Chris Hurley)가 제안한 평행 출처주의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기록의 기술 작업, 한마디로 ‘동시적 다중 출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외되어온 소수 공동체 아카이브의 복원을 위한 또 다른 사회적 출처주의의 유사 버전이자 기본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다.¹⁶⁾ 정리해 보면, 사회적 출처주의와 평행 출처주의는 지배계급만이 기록의 생산자로 간주되어 단일 저자가 되는 단일 출처주의를 벗어나 기록의 생산자를 다양한 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그/그녀를 둘러싼 사회적 층위를 포함하는 맥락과 범위로 확장하여 복잡적·다중적 출처주의로의 전환을 촉매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의 효과는 피지배 계급이나 소외된 공동체를 현존하는 지배계급 중심의 국가기록 관리체제와 동등하게 복원하도록 제안하는 주류 질서에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분류 및 기술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민주적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등장한 출처주의 관련 원칙들, 즉 사회적 출처주의와 평행 출처주의는 아카이브 정의에 기반한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큰 함의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들 비

15) 한편 ‘기록공동체(community of records)’ 개념은 2000년대에 북미에서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 온 바스티앙(Jeanette Allis Bastian)에 의해 소개되었다. 바스티앙은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 혹은 실체(entity)로서 공동체와 이러한 주체가 생산하는 기록을 맥락화하는 기억 프레임(memory frame)을 포괄하는 범주로 기록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기록공동체 또한 사회적 출처주의와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다. Jeanette Allis Bastian, *Owning Memory*, 2003; Jeanette Allis Bastian, “Reading Colonial Records Through an Archival Lens”, 2006, pp.267-284.

16) Chris Hurley, “Parallel Provenance (If these are your records, where are your stories?”.

판적 프레임을 가지고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을 더 이상 기록화 대상에서 소외시키거나 또는 기록의 주체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벗어나 이들을 기록의 생산자이자 주체로서 복원하여 사회적 집단기억 구축의 주요한 출처로 적극 사유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론적 프레임은 피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집단 기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록을 둘러싼 사회적 층위와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즉 과거사 아카이브의 역사적 내러티브 기술에도 효과적이다. 즉 분류와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단일 출처주의를 극복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다양한 출처를 동등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더 나아가 당시의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을 기록의 중요한 출처로서 복원 가능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실화해위의 좀 더 민주적이고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분류 및 기술체계를 설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아카이브 정의(사회적 출처주의와 평행 출처주의)는 해당 통치 엘리트와 동등한 사회적 출처로서 피해당사자의 주체성 회복을 돕고 자연스럽게 피해당사자들이 아카이브 구축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당사자를 출처로 하는 기록관리 체계는 피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와 콘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기록의 재맥락화를 보장하면서 기존의 지배 엘리트 중심의 아카이브가 만들어 내는 출처의 통제와 남용에 대응해서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지배계급 단일의 맥락적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 이상의 동시적·복합적 출처를 동등하게 다루는 사회적 출처주의와 평행출처주의에 입각한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은 기존의 주류 기록관리 체계가 구축해 온 집단 기억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아카이브

정의이자 사회적 정의로 기능할 수 있다.

(3) 아카이브 액티비즘

‘아카이브 액티비즘’(archival activism)은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보관자(keeper)로서의 역할보다는 가치지향적인 활동가로서 능동적이고 실천적 방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부당함을 증식시키기 위해 기록관리의 구태에 도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¹⁷⁾ 한마디로 당위적인 기록관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의 구현을 위해 부정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록가의 사회적 태도를 말한다.¹⁸⁾ 최근에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아카이브 액티비즘의 실천적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개발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지역재생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때로는 대항(反)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위한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구축되기 시작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대체로 제도화된 주류 헤게모니와의 정치적 투쟁이라는 역동적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공공의 인식에 도전하는 대항헤게모니 담론을 생산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역사를 대변해 왔다. 공동체 자체의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산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공동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기억을 대변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

17) Andrew Flinn,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7, 2011, p.1; 이현정, 「기록학 실천주의의 과제와 전망」, 『기록학연구』 42, 2014, 217쪽 재인용.

18) Diana Wakimoto,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Vol.13, 2013, p.295; 이현정, 「기록학 실천주의의 과제와 전망」, 『기록학연구』 42, 2014, 218쪽 재인용.

에는 사실상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액티비즘과 풀뿌리 자치운동,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그 주요한 동인들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영국에서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들, 플린과 스티븐은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진행된 정치·사회 운동의 맥락 속에서 찾으면서, 주류 아카이브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고 무시된 공동체들의 정치·사회 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바라봤다.¹⁹⁾

과거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항의의 한 형태로서 그리고 배제된 소수의 기록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전개는,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후견인으로서 아키비스트 개념을 포기하고 오히려 정치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상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아키비스트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관리인이 아니라 기억의 활동가로서 억압적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공동체 생성에 대한 구조적 지식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과 항시 소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로 돌아와보면, 과거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은 기억 구축의 정치적 동력인 아카이브 실천주의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한다. 망각과 삭제의 일삼는 탈정치적 상황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 역사적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비록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전환되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지배집단이 여전히 정부와 국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19) Andrew Flinn and Mary Andrew,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London, pp.3-28.

의 동시대적 재구성은 전적으로 파위의 정치학과 맞물려있다. 해리스(Verne Harris)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는 아카이브를 통한 기억 구축의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²⁰⁾ 그러므로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아키비스트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실천가로서의 역할로부터 물러나지 말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아카이브 정의에 기반해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을 재구성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상화를 지양하고 이들의 소외된 내러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피해 당사자의 시각과 요구에 응하고 지속적으로 이들 소수 공동체에 의해 주체적으로 통제, 관리, 접근되는 민주적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집단기억 아카이브의 구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참여와 시민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상시 접근권 보장, 그리고 피해 당사자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록의 재맥락화를 그 전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국내 아카이브 정의를 세우기 위해 피지배 계급과 소수 공동체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민주적 해석들, 즉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 사회적 출처주의(평행 출처주의), 아카이브 액티비즘 등을 좀 더 우리 기록 현실에 맞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자원을 동원해 기존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를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해 새롭게 모델링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앞서 보았던 이론적 프레임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대안 모델들을 살펴보려 한다.

20) Verne Harris, "Archives, politics, justice", in Margaret Proctor et al (eds), *Political pressure and the archival record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Chicago, pp.173-182.

3. 아카이브 정의에 기초한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모델링

1)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실태 분석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범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민주화 국면 이후 민간 정부들은 형사 재판, 진실화해위원회, 배상과 보상, 사면 등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이같은 역사 당위성을 내포한 성명(should-statement)으로서 이행기적 정의는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극적인 전환을 추동했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기록을 새롭게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통해 동시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것이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진실화해위의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학살, 실종, 조작 사건 등 국가 폭력이 낳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과거사에 대한 집단기억의 복원이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기억들은 때론 인위적이고 매우 가변적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 대립하는 복수의 기억으로 존재하기도 한다.²¹⁾ 이러한 기억의 변덕스런 속성에 대해 그 사실을 뒷받침하며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적 기록이었고,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성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중반 이후 인권 유린 사건을 접수하면서 진실화해위는 접수된 사건을 먼저 가해 주체(예를 들면 군·경찰·우익, 미군, 인민군·좌익, 그리고 가해자 미상 등)에 따라 먼저 분류하고 그 아래 사건을 성격(유형)별로 다시 분류했다. 예를 들면, 가해 주체가 군·경찰·우익인 경우에, 보도연맹원 처형, 형무소 처형, 정치적 적대자 집단 살상, 그리고 토벌 작전에 의한 희생 등으로 2차 분류하는 식이었다.²²⁾ 해당 사건

21)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28-31쪽.

과 관련해서 수집한 자료들은 1차 정부자료와 2차 민간자료로 유형을 구분한 뒤 사건의 분류 체계를 따라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신청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조사대상자는 가해자에 의해 1차 분류, 그리고 사건의 성격(유형)에 따라 2차 분류된 이후에, 인명과 인명관리번호를 기록철명으로 갖는 ‘인명철’, 즉 개인에 대한 케이스 파일을 생성했다. 이러한 개인파일은 각 사건별로 분류된 단위업무 하위에 생성되었고 그 속에 관련 심의자료, 심의조서 등과 같은 조사기록들이 수록되었다. 이들 조사기록은 이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법적이고 증빙적 가치를 제공하였다.

조사기록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이다. 조사기록의 대부분은 조사보고서였다.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기록을 통한 피해 진상규명 활동의 과정이자 결과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 사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로 작용했다.²³⁾ 조사기록 외에도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수집 자료가 있다. 주로 국내·외 출장 등을 통해서 수집하거나 기증 받은 것으로, 이는 조사기록을 만들어내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록들이다. 문서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진, 훈장, 상장, 편지 등의 시청각류와 행정 박물관도 수집자료에 포함되었다. 이들 수집자료는 이후 다른 학술연구에도 활용되어 역사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을 생산할 수 있기에 조사기록 못지않게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진실화해위에 국가폭력의 피해사실을 접수한 대부분의 신고인들은 사건 규명에 결정적인 정부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당시에 기록의 부재를 호소하며 개인, 가족, 주변 집단의 기억을 통해 피해사실을 주장했

22)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300쪽.

23)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008, 259-260쪽.

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는 사건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생산, 수집, 분석하는 조사과정을 거쳐 기록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갔다.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고, 수천 명의 피해자와 군·경 출신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학살 생존자들의 몸에 난 상처는 사진을 찍어 남기고 중요 증인은 동영상 촬영을 했다.²⁵⁾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과오를 방대한 관련 자료의 밀도있는 수집에 근거해서 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조사기록을 생산했고 국가 스스로도 자인하는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2010년, 4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생산하고 수집한 모든 기록, 즉 진실화해위의 아카이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 한시적인 국가 조직인데다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전시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이관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이관 당시에 조사활동에 급급한 나머지 자료집 발간 등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나 정리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로 기록을 넘겼다.²⁶⁾ 현재까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체계적인 구축의 후속 작업 없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현실태는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아카이브 구축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형식적’ 아카이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청산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시점은 언제나 민주주의로의 이행 단계에서 이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치가 그랬고,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등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투쟁

24) 김명옥,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록의 특징과 관리」, 『기록인』 2, 2008, 국가기록원, 123쪽.

25) 김동춘, 앞의 글, 402쪽.

26) 위의 글.

과정을 수행하면서 과거청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⁷⁾ 한국에서도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권위주의 군사정권에서 저질러졌던 학살문제를 비롯한 정치 암살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체로 역사적 사건 이후 정치적 희생에 대한 보상, 혹은 위정자로부터의 화해의 몸짓으로써 과거사 청산이 다루어졌고, 이 점에서 진실화해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진실화해위에서의 과거청산은 거의 역사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이나 무마 또는 민원 해결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히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역시 정치적 상징성을 띤 채 형식화된 측면이 강했다.

진실화해위는 활동 당시에 사건관련 기록의 수집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자연히 진실화해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과 피해 당사자의 집단기억의 복원을 위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이고 동시대적 재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이 진실화해위가 종료된 지 어언 5년여가 지났음에도 부재한 현 상황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형식주의적 상징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피해자 보상 중심의 과거청산(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의 정략적, 형식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수집하고 생산한 기록을 별도의 기록관리 체계로 정리하여 반영구적 사회적 집단기억의 장소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정태적’ 아카이브에 머물렀다는 점에 있다. 진실화해위가 수집한 한국 현대사 자료는 다른 어떤 기관이 수집한 것보다도 방대하고 풍부하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한국의 국군, 경찰, 사법부의 역사를 다시 써야함은 물론이고 한

27) 이영재,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광주민중항쟁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가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겨울호 23, 200-204쪽.

국전쟁의 역사와 군사정권 시기의 현대사도 다시 기술되어야 한다.²⁸⁾ 또한 피해 당사자들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와 직면하고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맥락화시켜,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치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역사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치유 공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목이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수집한 자료들은 폐쇄된 채 국가기록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학술적·역사적 자료로서도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셈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임무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설명성, 집단 기억, 그리고 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²⁹⁾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피해당사자들이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사 아카이브는 과거사 청산에서 핵심적 관건인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잔혹성의 진실이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국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육적 역할 또한 담당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역할은 진실화해위의 최종 결과보고서의 출간으로 손 털고 끝내버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아카이브의 최초 구축은 사실상 소외된 집단기억들과의 화해에 도전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기록이 단순히 보관의 기술이 아니면서도 신화화하고 전통이 되어 버린 잘못된 기억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아카이브는 이해당사자와 더불어 오늘을 사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공개되고 활용되어 동시대의 올바른 집단기억 구축에 마찬가지로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28) 김동춘, 앞의 글, 400-403쪽.

29) Joel A. Blanco-rivera, "Truth commission and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memory: the Chile experience",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2009, p.137.

후손들에게 공개·활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2)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대안적 모델링

이제까지 본 것처럼, 대안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형식주의로 인한 정태적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 규명의 사회적 기제로서 집단 기억을 제대로 복원하고 사회적 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아카이브의 재구축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카이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서 필자가 제안한, 과정으로서 아카이브, 사회적 출처주의, 그리고 아카이브 액티비즘 등의 이론적 프레임들이 최적화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모델은 어떤 것일까? 필자는 참여 아카이브, 스투어트쉽, 그리고 리빙 아카이브 모델을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을 위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참여 아카이브 모델은 과정으로서 아카이브와 사회적 출처주의의 프레임틀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구축 모델이다. 그리고, 스투어트쉽 모델은 사회적 출처주의와 아카이브 액티비즘을 실현하는 모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리빙 아카이브 모델은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현재 모습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최종 제안하였다. 각 모델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진실화해위의 대안적 구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전제사항으로 독해하면 좋겠다. 이제부터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참여 아카이브' 모델

기록학계에서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쉘톤과 스리누바산(Shilton & Srinivasan)이 제안한 참여 아카이브는, 그동안 기록의 중요한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체계에서 소외된 공동체를 평가, 정리, 기술 등 기록관리 과정 전반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³⁰⁾ 이 모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카이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과정으로서 아카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록 주제(record subject)이자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공동체를 기록화 과정에 참여시켜서 기록의 공동 생산자(record co-creators)로서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부여해, 지배적 저작자 중심의 단일 출처주의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적 출처주의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유권, 접근권,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공동체를 협의에 의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이해 당사자 또는 공동-생산자로서 복원하는 ‘참여자’ 개념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인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전문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참여 아카이브 모델은 아키비스트를 과거 기록의 수동적인 보관인의 시각에서 기록관과 공동체의 이해를 중재하는 적극적 역할자로 상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나 희생자의 가족들이 종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상당한 견해차를 보일 때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갈등의 중재를 매개하는 기억구축의 촉매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담지한다. 즉 참여 아카이브 모델은 아카이브 액티비즘을 구현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모델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아카이브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의 쿠리(Koorie)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사업, “신뢰와 기술 프로젝트: 원주민 구술 기억으로부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Trust and Technology Project: Building Archival Systems from

30)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Spring 2007), pp.87-101.

Indigenous Oral Mem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쿠리의 관점을 원주민 아카이브 구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카이브의 소유권, 기술, 그리고 이용 전반에 대한 결정에 쿠리 공동체를 적극 참여시켰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세대”에 관한 격리와 강제 입양에 관한 지배 기록 문서들의 처분에 있어서 원주민 공동체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했다.³¹⁾ 또한 자신들의 기록을 다스리는 아카이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기록 행위자’(records agents)로 격상하고, 원주민 지식에 대해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참여관계모델’(participant relationship model)을 제안했다.³²⁾

한편 후빌라(Huvila)의 참여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큐레이션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한다.³³⁾ 우리의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같은 ‘철저한 이용자 지향’(radical user orientation)에 근거한 참여 가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아카이브에 접근해서 과거의 부당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기록 행위와 결합된 사건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제공할 기회를 열어준다. 아카이브 이용자의 통합적 기록화를 포함하는 참여 아카이브 모델은,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극복하는데 유용하다. 진실화해

31) ‘잃어버린 세대’는 1910년에서 1970년까지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5만 명의 호주 원주민 아이들을 지칭한다. 백호주의의 열망과 지배 엘리트의 통치 전략아래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격리 수용하고 문화적으로 백인 교육을 시켜 이들이 지닌 로컬의 ‘야만성’을 원천에서 탈색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McKemmish S, Faulkhead S, Russell L, “Distrust in the archive: reconciling records”, *Archival Science* 11, 2011, pp.211-239.

32) Iacovino L, “Rethinking archival,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for records of Indigenous Australian Communities: a participant relationship model of rights”, *Archival Science* 10, 2010, pp.353-372.

33)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 2008, pp.15-36.

위 아카이브에, 예를 들면 위키(Wiki) 형식의 집합 지성적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공공에게 공개된 기록에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기술(description) 정보를 더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그저 갇혀있고 폐쇄된 채 정체된 아카이브가 아니라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아카이브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미디어를 활용한 호주국립기록청의 ‘맵핑 아우어 앤잭’(Mapping Our Anzacs)을 비롯해서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또한 이용자의 참여 기능을 지원하는 스크립트, 의견달기, 기증 등을 시도하면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참여 아카이브적 적용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³⁴⁾

결국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참여 아카이브는 피해 당사자를 아카이브 구축의 의사결정과정에 주체이자 공동-생산자로 참여시키고 이용자 또한 아카이브에 대한 동시대적 접근을 보장하도록 이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관련 기록들을 평가하고 분류·기술하고 공개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동적 과정 개입, 특히 국가 피해 생존자가 기존 증거적 진실과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참여 아카이브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아카이브의 관리나 자문 조직에서의 대표나 평가, 기술, 접근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기록화 업무에 희생자 가족의 전문적 훈련과 배치를 통한 능동적인 개입은 피해 당사자 중심의 기록의 재맥락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에 동시대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 중심의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에 역사적 소통의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더하도록 허용하면서 아카이브가 과거에만 정박하지 않고 더욱더 폭넓은 동시대의 맥락 속에서 집단기억의 생생한 구축

34) 현문수·전보배·이동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기록학 연구』 42, 2014, 276-282쪽.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스튜어트십’ 모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기록 중심에서 민간기록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동했던 공동체 아카이브는, 지금까지 지배적인 아카이브 프레임인 ‘보관주의’(custodianship)를 비판하면서 그 실천적 대안으로서 ‘스튜어트십’(stewardship)을 제안했다. 스튜어트십은 “공동체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 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³⁵⁾ 보관주의에 따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을 기록관으로 넘기는 것은 곧 기록의 차후 지속적인 유지와 사용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 권한도 공동체에서 기록관으로 완전히 이양된 것을 의미한다. 기록관리의 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보관주의는 물리적 보관과 관리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보관주의가 그동안 기록의 출처이자 생산 주체였던 공동체를 기록관리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자들은 보관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리가, 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 권한을 잃게 됐다고 본다. 보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은 이의 대안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튜어트십 모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스튜어트십의 프레임을 강조

35) 이현정,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014, 241쪽.

한 대표적인 학자로 유를(Joel Wurl)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소수 인종 공동체 아카이브가 스튜어트쉽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기록을 생산하는 공동체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관의 지속적인 상호 협업과 파트너쉽을 강조하면서 이에 기반한 스튜어트쉽이 기록을 기록관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기록관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투자된 문화적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⁶⁾ 이렇듯 기록을 생산하는 공동체와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의 대등한 파트너쉽과 공동의 보유(권)를 강조하는 유들의 스튜어트쉽은, 최근에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공동체 스스로의 '자율/자치'(autonomy)권과 공동 소유권 프레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영국에서 스티븐(Mary Steven) 등이 주장하는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아카이브간의 파트너쉽 모델은, 양측이 보관 협약을 맺는데 있어서 이전처럼 공동체가 주류 아카이브에 기록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기록관에 모두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공동체 스스로 보유하면서 아카이브의 보관, 수집, 큐레이션 및 배부에 있어 자치 권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동체가 생산한 컬렉션의 소유 및 통제권을 기록관이 넘겨받는 관례적인 보관협약을 포기하고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컬렉션에 대한 외부 접근권을 보장받는 보관협약을 제안한 것이다.³⁷⁾ 바로 스튜어트쉽은, 공동체가 자치권, 자기결정권을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기록에 대한 공동체 자신의 기록 소유권 확보로 이어진 경우다. 호주에서 평행 출처주의에 입각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

36) Joel Wurl, "Ethnicity as provenance: in search of value and principles for documenting the immigrant experience", *Arch Issues* 29(1), 2005, p.75.

37)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p.64; 이경래 · 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2013, 32쪽.

한 논의는 또 한번 원주민 기록의 소유권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카이브에서 원주민들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기록의 주체인 원주민들이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었다. 관료조직이나 저작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의 소유권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을 기록에 대한 접근이나 평가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민 자신의 기록 소유권 회복, 그리고 백인 관료나 저작자뿐만 아니라 원주민 자신이 생산한 기록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기록의 공동 소유권 체계가 제안되고 있다.³⁸⁾

스튜어트쉽 모델은 이렇듯 통치자와 소수자의 동거를 용인하는 공동 소유권 프레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를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해서 보자면, 스텐어트쉽은 개념적으로 기록의 유지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텐어트쉽 모델에 따르면, 인권유린을 기록하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국가, 정치인, 언론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이해관계, 즉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기록에 대해 기존의 단일 소유권 체계에서 공동 소유권 개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스텐어트쉽 모델은, 시대별 통치주체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 기록화 과정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중심에 서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어디에 보관되든지 (대학도서관이건 정부기록관이건) 기록관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것이 피해 당사자와 기록관 공동의 소유권에 기반한 스텐어트쉽에 따라 관리

38) <<http://infotech.monash.edu/research/about/centres/cosi/projects/trust/final-report/5-building.html>>, [인용날짜: 2015. 7. 10]; 이경래,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2014, 55쪽.

되고 보존된다면, 관련 피해 당사자들은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집단기억의 기록물에 대한 통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현재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기존의 보관주의에 입각한 기록물의 '소유권'(ownership) 체계, 다시 말해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관이나 보관소가 기록물에 대한 제반 권한을 자연 획득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역사적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는 스투어트쉽에 근거하여, 학살을 기록하는 기록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들이 유지되는 조건들을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투어트쉽 모델을 통해서만이 피해 당사자 중심으로 구축된 아카이브가 미래에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소유권에 근거한 스투어트쉽은 이제까지 타자화된 피해 당사자들을 기록관리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다. 또한 기록관과 피해당사자들의 소통과 지속적인 관계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스투어트쉽은 아카이브 액티비즘을 그 근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투어트쉽을 표방하는 공동체 기반의 온라인 저장소인 '남아시아계 미국인 디지털 아카이브'(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이하 SAADA)는 그 활동에 있어 아카이브 액티비즘의 주요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AADA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주민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풀뿌리 조직들과 기록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우위를 두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³⁹⁾ 활동가들이 생산한 기록을 스투어트쉽에 기반하여 기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록을 공

39) Michelle Caswell, "SAADA and the community-based archives model: What's a community-based archives anyway?"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http://www.saadigitalarchive.org/blog/20120418-704>, [인용날짜: 2015. 7. 15];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 Science* 14, 2014, p.316.

동체의 필요에 따라 보존에서부터 기술, 디지털 큐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하는 경우다. 이는 아카이브 액티비즘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3) ‘리빙 아카이브’ 모델

‘리빙 아카이브’(a living archive)는 한마디로 아카이브를 정태적인 완결된 물리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고려하면서 동시대의 논쟁과 반박을 통해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확장을 지향하는 기록학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기록학적 모델이기도 하다. 진실규명에 있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역할에 주목한 케틀라르(Eric Ketelaar)는, 진실화해위가 한시적으로 밝혀낸 ‘법적 진실’(forensic truth)은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즉 그는 과거 청산에 있어 진실화해위의 역할은 가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개인적·사회적 맥락, 즉 서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고 봤다. 케틀라르는 서사적 진실을 위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가 논쟁과 반박의 장이자 많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확장해 나가는 리빙 아카이브의 형태로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⁴⁰⁾ 리빙 아카이브로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모델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담론들과 이해관계들을 동시대에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논쟁의 장과 같다. 리빙 아카이브 모델은 동시대의 사건, 새로운 해석,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기존의

40) Eric Ketelaar, “A living archive, shared by communities of records,”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2009, pp.109-132.

시각을 변화시키고 사건을 재조명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역사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다.

한국에서 진실화해위가 국가 폭력 범죄자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보상 문제, 즉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급급하면서 아카이브는 법정에서 증빙 가치를 지니는 기록, 즉 조사기록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달리 말해 역사 서술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차원의 기록 생산과 수집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빙 아카이브로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 모델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인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기록공동체의 다층적 내러티브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구축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리빙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폭력의 피해당사자 및 이해당사자들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논쟁하고 반박하면서 물활적으로 확장해가는 아카이브 설계 모델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공공기록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거의 국가폭력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을 공개하여 피해당사자 및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나 과테말라의 다큐멘테이션 센터는 과거사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용자들이 진실화해위 기록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첨부해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타당성에 도전할 수 있고, 도전받은 문서는 도전하는 문서와 상호 참조로 연계되어 도전받은 문서가 요청될 때마다 이에 딸린 도전 문서 또한 함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목격자의 증언과 이에 대한 공식 기록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에 포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곧 피의자

와 피고인, 목격자와 희생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적 맥락과 연계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개인적 치유를 얻음과 동시에 동시대의 사회적 맥락 속으로 스스로를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석 시스템’(annotation system)을 비롯한 웹2.0의 적용은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서버에 사회적 탐색과 이용자의 증거를 업로드하는 것을 활성화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리빙 아카이브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진실화해위가 수집한 기록들은 그동안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기록물들, 그리고 해외 소장 기록물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리빙 아카이브의 또 다른 확장 층위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부 수립 이후의 공공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해서 한국 관련 해외사료를 수집해 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군사 관련 문서를 주로 수집해 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이 정부 기록기관으로 대표적이다. 민간기록으로는 당시의 신문자료, 그리고 경찰, 검찰, 군인이 쓴 개인 회고록 등을 들 수 있겠다. 회고록의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화자찬인 경우가 많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학살에 이르는 정부 인사들의 레드콤플렉스와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의 아니게 학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⁴¹⁾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민간인학살 기록이 가장 많이 소장된 곳은 단연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이다.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이러한 국내·외 정부기관들과 민간 시민영역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들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밀기록물들을 공개하는 쪽으로 확장되어야

41) 민간인학살 기록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는, 김득중, 「민간인학살 기록현황과 수집·관리방안」,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학회 광복60년 종합학술대회 제4차, 2005.8, 105-122쪽 참조.

한다. 과거사 관련 증언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였던 국내·외 기록물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개와 재분류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를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논쟁과 반박, 관련 아카이브와의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공개 및 재분류를 통해 정태적이고 완결된 과거사 아카이브가 아니라 유기체와 같이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리빙 아카이브로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만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민간인 학살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 당사자들 자신의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 속에 넣어 기억-연습하는 치유의 의식⁴²⁾을 행하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이 가능하다.

4. 나오는 글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전환함에 따라 이행기적 정의 구현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위로하여 각자의 자리로 복귀시킬 것인지 그리고 피해사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억할 것인지의 문제, 즉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 자체는 국가 미래를 세우는 작업만큼이나 한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로 삼았다. 총 11,160건의 접수 사건 중 7,770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구어낼 정도로 진실화해위의 역사적 역할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4년여 동안의 진실 규명을 통해 요구된 권고사항 이행이나 후속 조치가 나왔음에도 이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행되

42) Joel A. Blanco-rivera, *ibid.*, p.137.

지 못했다. 진실이 규명된 유족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그 해결은 현재까지도 요원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방대한 규모로 수집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역시 그 정태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도 이미 살폈다.

한시적 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종료했던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인 정리 작업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이를 넘겨받은 국가기록원 역시 현재까지도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기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아카이브에 머물러 있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현재 모습은, 이제까지 봤던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진실화해위가 생산한 기록의 보존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개발한 피터슨(Trudy Peterson)에 따르면,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은 기록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에 선택적인 기억상실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한다.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의 목적은 강요당한 침묵을 깨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집단기억들을 복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터슨은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 시기 기억상실이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보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⁴³⁾ 즉 진실화해위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구축임을 그 또한 강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실화해위 활동을 지켜 본 해리스 역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 기억, 설명 책임성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록 ‘정의’라고 봤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정을 고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는 그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기제보다 강력한 사회 정의의 기제로 여겨

43) Trudy Huskamp Peterson, *Final Acts: A Guide to Preserving the Records of Truth Commission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pp.1-2;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The American Archivist*, Vol.70 (Fall/Winter 2007), p.264, 재인용.

졌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피해 당사자가 그 중심에 서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구축은 전통적 의미의 가치중립적 아카이브로부터의 철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정의라는 보다 가치지향적인 아카이브 구축, 즉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 구축이란 결국 피해당사자가 아카이브 구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당사자들의 개인적 기억(트라우마)이 집단기억 속으로 맥락화(혹은 사회적 치유)되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그 기본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으로써 지배 권력과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과정으로서 아카이브, 사회적 출처주의(평행출처주의), 그리고 아카이브 액티비즘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을 위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모델로, 참여 아카이브, 스투어트쉽, 리빙 아카이브 모델을 제안했다. 이 글은 이를 통해 아카이브 정의의 개념적·이론적 관점을 세우고 국가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성을 고민했다.

이 글은 국내 기록학계에서 역사적 피해자의 집단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 프레임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그것은 실제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역사적 장을 또 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아카이브 등 주류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돼 존치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했다. 작으나마 이 글의 문제의식이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작업에 자극을 주고 유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에 실질적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아카이브 정의'에 입각한 기

록화 체제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아카이브나 더 나아가 동시대 역사적·사회적 '사건' 아카이브 등으로 확대하고 연결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식민지 지배-피지배 경험과 오늘날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들(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투쟁, 용산참사,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4·16세월호 참사 등)의 집단 기억의 기록화와 관련해서, 각각 당대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정의에 입각한 보편적인 집단기억 아카이브의 민주적 구성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ABSTRACT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Lee, Kyong Rae

This article purposes to define archival justice and suggest democratic model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RC), which is focused on victims of state violence. These purposes come from critical mind that the absence of framework of the records management for collective memory would cause incorporation of TRC archives into mainstream archives systems in which voices of victims have been marginalized. This article intends to expand theoretical prospects of documentation of past affairs through applying humanistic and theoretical frameworks differently from institutional and policy approaches on restoration of collective memory. In order to do this, this article first considers archival justice as archives building in which state violence' victims are pivotal and then extracts theoretical frameworks for building the archives based on archival justice from recent discourses of post-colonial archives and community archives. As the next step, it criticizes current conditions of TRC archives in Korea on the basis of

extracted theoretical frames and finally suggests realistic models in which each theoretical frame could be applied effectively into TRC archives that is focused on victims.

Key words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chives, Collective memories, Archival Justice, Past Affairs-Related Commission Archives, Community of Records, Community of memory, Community archives, Post-Colonial archives, Archives as a process, Social provenance, Parallel provenance, Archival activism, Living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s, Stewardship